

KUSF 배구 클럽챔피언십 2025 지역 예선 규정

가. 전체 대회규정

1. 총칙

제1조 (명칭)

- 본 대회의 명칭은 “KUSF 배구 클럽챔피언십 2025 지역 예선(이하 ‘대회’)” 으로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KUSF)가 주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한다.

제3조 (기간 및 일정)

- 기간 및 일정은 KUSF가 결정하여 사전에 공지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대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대회의 취소 또는 연기)

- 국가재난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대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회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제5조 (경기규정)

- 대한민국배구협회(KVA)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KUSF가 정해놓은 로컬룰(경기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6조 (참가자격)

- 본 대회의 참가 선수자격은 대회 기간 내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제한한다.
 - 단, 대회 기간이 방학일 경우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졸업유예, 수료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은 선수로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학부생 또는 교환학생만이 참가 가능하며 대학 어학당의 외국인은 출전을 제한한다.
- 선수 출신의 참가를 제한한다. 단, 초등부 이하 선수 출신은 출전할 수 있다.
 - 선수 출신 확인은 종목별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 선수 출신 또는 외국인 선수등록 인원 제한은 없으나, 경기 진행 시 코트에 1명까지 허용된다. 단, 선수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최 측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

- 남자부에 여자 선수가 뛰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해당 학교의 여자 대학팀이 없을 경우에는 1명의 여자 선수는 남자부 소속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제7조 (저작권)

- 본 대회의 모든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해당하는 저작권은 아래와 같다.
 1. 대회와 관련된 사진 및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2. 대회 기간 선수들의 초상권
 3. 선수 경기 화면 및 향후 재가공되는 모든 영상 관련 콘텐츠

제8조 (참가신청)

- 참가신청은 팀 대표자가 마감일 내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 요강에 명시된 이메일로 접수하여야 한다.
 - 모든 참가 선수는 KUSF 홈페이지 내 클럽챔피언십 멤버십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참가신청서에 아이디를 작성해야 하며, 미가입 또는 하위 제출 시 해당 선수는 대회 출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참가신청 선착순 확정은 참가비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 참가 팀 수가 모집 팀 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참가 팀을 선정한다.
 - ① 주최 측 판단에 따라 운영 가능 범위 내 참가팀 확정
 - ② ①번 기준 적용 후, 동일 캠퍼스 1개 팀 기준 적용
 - * 전체 참가팀 확정 후 캠퍼스 중복 팀 대상으로 사전 경기 진행하여 1개 팀 대회 참가
 - * 중복 팀 수에 따라 경기 방식은 달리질 수 있으며, 참가팀 확정 후 사전 경기 방식은 해당되는 팀에게 공지
 - * 경기장 대관 상황에 따라 사전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입금 기준 선착순으로 진행할 수 있음
 - ③ ②번 해당 사항 없는 경우, 입금 기준 선착순으로 참가팀 확정
- 참가선수명단 수정은 KUSF가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어떠한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대회운영

제9조 (경기방식)

- 본 “대회”는 참가신청을 통한 참가 팀을 모집하여, 확정된 팀 수에 맞춰 조별예선 후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 * 조별예선 및 토너먼트 운영 방식은 참가팀 확정 후 대표자 회의에서 참가팀에게 공지한다.
 - * 결선 진출 팀 수나 결선 P.O 진출 팀 수는 참가 확정된 팀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신분확인)

- 종목별 신분확인은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 모든 선수가 직접 본인 서류(신분증, 재학증명서)를 지참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하며, 실물 신분증과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정한다.
 -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의 이용을 통한 신원확인은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 또는 증명서상에 사진이 있어야 함)
- 재학증명서 및 재학증명은 인터넷 또는 기타(테블릿 PC, 스마트폰)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증명서는 참가하는 대회 해당 연도 내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한다.
- 출전선수는 주최 측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할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불응할 시 경기에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제11조 (유니폼)

- 참가하는 모든 팀은 동일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유니폼 디자인 부분이 약간 다르면 심판 및 경기 감독관이 판단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 참가하는 팀의 유니폼이 상업성을 나타내거나 지나친 광고 목적을 가진 유니폼일 경우,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팀 조끼 착용 또는 상표 가리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팀은 무조건 수용해야하며, 수용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유니폼 규정은 종목별 경기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12조 (장비)

- 모든 선수는 안경, 반지, 귀걸이, 팔찌 등 다른 선수를 다치게 할만한 물품은 착용할 수 없다. 안경은 보호 안경만이 가능하며 보호 안경의 상태를 시합 전에 심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제기)

- 경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 내 주최 측에 소청하여야 한다. 경기 및 선수자격 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자료와 문서는 이의제기한 팀에서 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합당한 이의제기의 경우, 추가 조사를 하고 각 팀은 경기결과 및 선수 자격에 대한 주최 측 결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4. 대회 별칙규정

제14조 (경기장 질서 문란)

- 경기장 내에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1) 물리적 폭력 행위 :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법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권을 영구 박탈한다.
* 폭력사태 발생 시 즉각 경찰 신고 후 해당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인계한다. 당사자 과실이 인정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2) 폭언, 모욕 등 언어적 폭력 행위 :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을 해당연도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 3) 과도한 판정 항의 :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을 해당연도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몰수패로 인정한다.
 - 4) 시설 및 기물 파괴 : KUSF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참가 자격을 해당연도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벌칙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범위는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에 있는 심판, 경기원 등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 대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5조 (부정선수)

- 선수 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해당 선수가 참가자격에 어긋나는 선수이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부정선수와 부정선수가 속한 팀은 잔여 경기에 더 출전할 수 없다. (단, 고의적이 아님을 제소하여 주최 측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인정하면,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만 몰수패가 적용되고 이후의 잔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최 측에서는 부정선수에게 2년 참가 자격과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팀은 최대 2년간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몰수패)

- 몰수패, 기권패가 있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조별예선 최하위로 기록된다. 단, 사유가 천재지변, 심각한 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주최 측에서 판단하여 최하위 벌칙은 면할 수 있다.
- 모든 종목은 경기 시작 전 경기규정에 명시된 최소 인원이 경기장에 있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몰수패로 인정한다.
- 몰수 경기 스코어는 종목별 경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사전 몰수패 또는 기권으로 인하여 경기를 취소할 경우, 주최 측에서 그 사유와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팀에게 최대 1년간 KUSF가 주최 · 주관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참가비에 대한 환불은 없다.

5. 대회 기타규정

제18조 (대회공지)

-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지사항 및 경기일정 변경의 사항 등은 KUSF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대표자 단체방 등을 통해 공지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당 팀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이외의 제반 사항)

- 본 대회규정에 제반 되지 않은 내용 발생 시 주최 측의 판단 또는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 배구 경기규정

1. 경기 규정은 대한민국배구협회(KVA)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KUSF가 정해놓은 로컬룰(경기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6인제 경기방식으로 한다.
 - 네트높이: 남자 2.38M / 여자 2.15M
 - 로테이션 및 리베로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6인제 규칙에 따라 경기는 진행된다.
2. 경기심판진은 주심, 부심, 기록원, 선심(2인)으로 구성된다.
3. 경기는 3판 2선승제로 이루어지며 최소 2점을 앞선 상태에서 21점을 선취한 팀이 승리한다. 최종 세트는 최소 2점을 앞선 상태에서 15점을 선취한 팀이 승리한다. (듀스 상황 시 2점의 점수 차이가 나야 경기가 종료된다.) 단, 주최측에 판단에 의해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4. 배구 코트에는 당일 현장에서 제출한 엔트리에 작성된 선수 및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선수는 최대 12명과 관계자는 최대 3명으로 제한한다.
5. 각 팀은 세트당 2번의 타임아웃과 6번의 선수 교대를 요구할 수 있다.
6. 경기 엔트리는 선수 최대 12명으로 구성되며 단장, 감독, 코치, 주무 등 임원이 선수로 출전할 경우, 참가신청서 및 당해 경기 컴포지션멤버 용지에도 반드시 선수로 명기하여야 한다.
 - * 경기 엔트리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되는 선수 명단이 아닌 매 경기 제출하는 컴포지션멤버 용지에 기재되는 선수를 말함
7. 경기 중 벤치에는 한 명의 감독만이 서 있을 수 있다. 단, 심판 판정 항의나 이의 제기는 대표자만 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참가선수 엔트리에 표시하여 사전 제출 하여야 한다. 대표자는 참가 선수만 가능하며, 대표자 외 선수 또는 관계자가 항의할 경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8. 참가 팀 감독은 1세트 라인업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2, 3세트 선발라인업은 전 세트 종료 후 2장씩 작성하여 기록석에 제출한다.
9. 경기 시작 전 제출한 컴포지션멤버 용지에 기록된 명단 내에서만 매 세트 시 교체가 가능하며 그 외 선수(엔트리 명단 외의 선수)의 교체 출전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당해 경기 몰수패를 선언한다.
10. 세트스코어가 2-0일 경우, 승자가 승점 3점을 가져간다. 세트스코어가 2-1일 경우, 승자가 승점 2점, 패자가 승점 1점을 가져간다.
11. 조별리그 순위 및 전체 조별 순위는 승점 → 세트득실 → 점수득실율로 결정한다.
12. 몰수 또는 기권패가 발생할 경우, 스코어는 2-0으로 표기하며 세트 승만 기록이 인정되며 세트 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13. 각 팀의 유니폼 상의는 팀원 간 색상이 동일하여야 하며 하의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비슷하면 인정하며, KUSF의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4. 각 팀의 리베로 유니폼은 팀원과 색상이 구분되어야 하며, 다른 유니폼이 없을 시 KUSF가 제공하는 조끼를 착용해 구분한다.
15. 체육관에는 실내화만 착용해야 하며 구두나 실외화는 금지한다.
16. 대진표상에 정해진 경기개시 시간보다 10분이 지연될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하여 몰수패 처리한다. (경기개시의 최소 인원은 6인이다.)

17. 출전 참가 선수의 부정 여부 등 제반문제점을 소정의 열람기간에 사전 확인 혹은 대회현장 및 대회기간 중 제보하여 부정선수(대리출전자, 졸업이 지난 사람, 대한배구협회 등록 선수, 이중 참가 신청자 등)로 판명이 될 경우, 그 팀은 실격 처리하며, 대회 별칙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8. 현장 부정 선수로 판명되면 당해 경기는 물론 잔여 경기 모두 몰수가 되며 이를 거부하고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제재에 처한다.